

# 뉴욕시 재산세 미납금이 있으신가요?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으셨나요?

**재산세 이자 경감  
프로그램이 도움이  
될 수 있습니다!**

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부동산 소유주를 위해 재무부는 2021년 7월 1일 또는 10월 1일에 마감되는 재산세 납부에 대한 연체 이자 비용을 최대 6개월까지 줄이거나 완전히 면제합니다.

## 분기별로 청구되는 부동산의 경우

재산세가 분기별로 청구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

- 이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사용합니다.
- 연간 수입이 \$150,000 미만입니다.
- 코로나19로 인해 악영향을 받았습니다.

협동조합 건물은 자산 평가 가치가 유닛당 평균 \$250,000 미만이고 주주의 30%가 코로나19에 의해 악영향을 받은 경우 자격이 있습니다.

## 반기별로 청구되는 부동산의 경우

재산세가 반기별로 청구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귀하의 재산은 평가 가치가 1백만 달러 미만인 세금 등급 2 또는 4 건물입니다.
- 팬데믹 기간에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이 6개월 동안 최소 50% 감소한 경우 또는 부동산에 주거 유닛이 50개 이하이고 팬데믹 기간에 6개월 동안 소유자의 소득이 최소 25% 감소한 경우 및 기타 모든 자격 기준을 충족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 
**[www.nyc.gov/interestabate](http://www.nyc.gov/interestabate)**  
를 방문하거나 311로 전화하십시오.

